[별표 4] 주차장 설치 기준 <개정 2024.2.14>

(단위 : 대)

1. 영구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 지역
영구임대주택	0.40	0.35	0.30	0.25
예외조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국민임대주택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 지역
국민 임대	40㎡미만	0.80	0.75	0.70	0.70
	40㎡이상~ 50㎡미만	0.90	0.85	0.80	0.75
	50㎡이상~ 60㎡미만	1.00	0.95	0.90	0.85

3.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대/세대)		
구분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도농복합형태 시는 제외)	그 밖의 지역
청년,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 주택 입주자	0.50	0.70
대학생	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장기근속자	1.00	
주거급여수급자	0.30	
고령자	0.30	
산단근로자	0.85	
예외조항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에서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고, 공공 주차장과 행복주택을 복합개발하여 행복주택 입주자가 공공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공공 주차장만큼 행복주택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단, 전단의 조건에 따라 이미 완화 적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4.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 면적별	서울 특별시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지역	시지역 및 수도권내 군지역	기타 지역
40㎡미만	0.80	0.75	0.70	0.70
40㎡이상~ 50㎡미만	0.90	0.85	0.80	0.75
50㎡이상~60㎡미만	1.00	0.95	0.90	0.85
60㎡이상~70㎡미만	1.00	1.00	1.00	1.00
70㎡이상~85㎡이하	1.10	1.00	1.00	1.00
예외조항	가. 입주대상이 청년·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계층으로 특화된 경우 행복주택 기준을 준용한다. 나. 통합공공임대주택에서 인근 100m 이내에 위치한 공공주차장을 입주개시일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공공주차장 만큼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입주를 신청하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입주대상이 쪽방거주자 등 1인가구 중심의 취약계층으로 특화된 전용면적 30㎡ 미만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기준을 준용하며, 전용면적 30㎡이상인 경우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